

1970년도 사업계획

1. 건축사법 개정

(1) 목 표

건축사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여 건축사업무의 개선은 물론 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위함.

(2) 이 유

불합리한 규정을 시정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다.

- ①국제간의 건축사자격의 부여에 있어 호혜정신에 입각하여 주체성을 보장하고 (사법 2. ① ②)
- ②선진국에 없는 건축사등급제도의 폐지 (사법 3. 4. 5. 6 등 관계조항)
- ③건축사업무중 공사감리규정의 보완으로 건축행정의 체계화를 기한다. (사법 20 ③)
- ④무등록업의 금지조항에 점적금지조항 신설
- ⑤기타 불합리한 조항 (사법 25 ① ②)

(3) 방 법

본회에서 건의되어 이미 건설부에서 개정시 참가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국회건설전문위원회에도 참고하도록 제출된바 있어 이를 국회 및 관계부처에 조속 추진토록 촉구

2. 건축법 개정

(1) 목 표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2) 이 유

불합리한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함에 있으며 주요조항은 아래와 같다.

- ①건축물의 공사시에 공사감리자를 두도록 규정한다. (법 6)
- ②건축면적에 있어 대지면적에서 30m²를 감하는 규정을 삭제 (법 39)
- ③건축물의 높이 한도규정을 삭제 (법 40)
- ④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법 41 ①)
- ⑤기타 불합리한 조항

(3) 방 법

본회에서 건축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건설전문위원회 제출, 정부 서울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심 의시 반영토록 추진중에 있음. 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개정되도록 할 것이며 기작성된 건의안중에서도 수정이 요하는 사항은 계속 반영토록 함.

3. 건설업법

(1) 목 표

건설업법중 건축사업무와 연관성있는 조항중 불합리한 것을 개선토록 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건설기술자 면허취득에 관한 사항을 계속 개선되도록 추진

(2) 이 유

건설업법중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회원의 업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고 권익을 신장하고자 함.

(3) 방 법

- ①자료수집
- ②공청회 등 개최
- ③본회위원회 활용 개정안 작성
- ④건의 및 추진

4. 과세표준

(1) 목 표

회원의 업무에 대한 과세표준소득율의 현실화 69년도에 이어 계속추진

(2) 이 유

건축사 업무의 과중한 과세로 건축법 건축사법의 정신과 목적을 다할 수 없을 뿐더러 회원의 경영난등 도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과세율현실화를 추진코져 함.

(3) 방 법

본회의 총력을 기울여 당국과 절충 추진함.

5. 보수기준 개정

(1) 목 적

현행 보수기준을 개선하여 업무수행상의 모순을 지양하고 권익의 신장 폭리 증진을 도모함.

(2) 이 유

현행보수기준중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것을 상기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방 법

현재 당국에 제출된 개정안을 분석 검토하여 보완 추진 하여 인가받도록 함.

6. 건설자재 노임시세자료수집 및 보급

(1) 목 적

회원의 업무중 견적서 작성과 건설자재에 대한 시세파악등을 조장 발전하고자 함.

(2) 방 법

건설부 건설협회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경제적인 방법을 연구 수집하여 회원이 이용되도록 록 각지방단위로 보급함.

7. 회지발행

(1) 목 적

현행 건축사회지의 질적향상을 연구하여 발전시키고, 격월간을 월간지로 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검토하여 회원과 국가건설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이 유

건축기술의 향상과 건축행정의 건설적인 비판과 건의, 학술의 탐구, 시공기술의 계몽, 창작활동의 현황, 설계작품의 논평, 실무경험기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사항등 증진을 도모함.

(3) 방 법

그간 독립 재산으로 발전시키고져 특별회계를 설정 운영하였던바 그것의 질을 분석한바 별로 발전을 보지 못하고 독립재산으로는 운영기 곤란하며 계속 일반회계에 의존함으로써 면목상으로만 독립재산이지 실제로는 일반회계의 부담만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회지의 질적향상의 둔화, 불합리하고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70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단일화함으로서 제반 불리한 사항을 일소코져 함.

8. 강습회

(1) 목 표

회원 실무강습회 기타.

(2) 이 유

회원업무의 향상과 국제간의 기술교류등 회원자신의 식견을 신장하고 기술 향상과 품위를 증진하는데 있음.

(3) 방 법

- ① 계획수립
- ② 계획표 작성
- ③ 자료 수집
- ④ 교재 작성
- ⑤ 각지부별 개최
- ⑥ 가능한한 본회에서 경비 전담

9. 행 사

(1) 목 적

협회의 권위신장과 건축사업무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정부관계 및 국제관계 행사

10. 선전계몽

(1) 목 적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농어촌 및 서민주택의 개선 및 생활향상 도모를 꾀한 건축사업무의 정당한 계몽과 협회에 대한 인식을 쇄신하기 위한 P. R. 임.

(2) 방 법

- ① 농어촌 및 서민주택, 설계작품 수집 및 전시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선전계몽
- ② 각종 매스콤을 이용한 P. R. 사업

11. 각분야 시찰

(1) 목 적

회원의 기술향상 및 식견을 넓히고 친목을 꾀하는 각분야 시찰

(2) 방 법

- ① 관계부처와 협의
- ② 계획서 작성
- ③ 시찰계획 통지
- ④ 시찰 및 보고서 작성
- ⑤ 회지발행에 반영

12. 회원명부

(1) 목 적

협회 회원명부 발간

(2) 이 유

협회 및 회원간의 업무연락 및 선전

(3) 방 법

- ① 수시로 이동사항 조사정리
- ② 편집, 교정, 인쇄

13. 농어촌 주택작품 전시회

(1) 목 적

국가정책에 호응하여 미개발된 농어촌의 주택의 개선과 계몽을 위한 작품 전시

(2) 방 법

- ① 추진위원회 구성
- ② 계획수립
- ③ 작품모집
- ④ 전시